

서울전세버스 운송약관 개정(안) 신 · 구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 1 장 총 칙</p> <p>제 1 조 (목 적) 이 운송약관 (이하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</u>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 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. 2. 계약이라 함은 전세버스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 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. 3. 수화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내 <u>진입이 제한된 물품</u>이외의 휴대수화물을 말한다. 4. <u>신 설</u> <p>제 3 조(약관의 적용)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<u>적용한다</u>.</p> <p>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 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<u>대하여는</u>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.</p>	<p>제 1 장 총 칙</p> <p>제 1 조 (목 적) 이 운송약관 (이하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이하 “<u>여객자동차법</u>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자</u>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----- -----<u>차내</u> <u>반입이</u>----- -----. 4. <u>승무원은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운수종사자를 말한다.</u> <p>제 3 조(약관의 적용) ① ----- ----- 운송계약 <u>및</u>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<u>적용한다</u>. <u>다만 여객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속조합원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대해서는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4 조(여객의 동의) 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	<p>제 4 조(여객의 동의) 여객은 사업자와 문서,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운송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하였을 때에는 ----- -----.</p>
<p>제 5 조(약관의 변경)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 조(약관의 변경) ----- -----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-----.</p>
<p>제 6 조(공시)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 등을 <u>공시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 6 조(게시) ----- ----- 게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 7 조(준수사항) 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발시간 (왕복 운행 시 <u>돌아올 때와</u> 출발시간을 포함한다) 2. 승차 및 출발장소, 행선지, 운행거리 및 경로, 운행종료장소 3. 버스차종과 승차 정원 4. <u>요금 및 운임</u> <p>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<u>10분</u>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신 설 	<p>제 7 조(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발시간 (왕복 운행 시 돌아올 때의 출발시간을 포함한다)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운송요금 <p>② ----- ----- ----- 20분 지연됨은 ----- -----.</p> <p>5.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제 2 장 계 약 및 운 임	제 2 장 계 약 및 운 임
<p>제 8 조(계 약) ①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, 이에 동의하는 경우 <u>계약서를 발행하고</u>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. 다만, 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을 생략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여객은 승차 시 <u>계약서를</u> 제시하여야 하며,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,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</p>	<p>제 8 조(계 약) ①----- -----, 이에 동의하는 경우 <u>계약서, 전자문서 등을 발행하고</u>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. 다만, -----.</p> <p>② 여객은 승차 시 <u>계약서, 문자메세지, 출력물 등을</u> 제시하여야 하며,-----.</p>
<p>제 9 조(계약의 조건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. 차내 질서유지 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 차내질서를 유지케하는 조건 3. <u>버스 주행 시 이외의</u> 여객과 승무원 동행 관광 또는 여가활동금지조건 4. <u>2시간 계속운행 후 10분이상 휴식조건</u> 5.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운행일정의 제한조건 6. 기타 안전운행에 <u>필요한 조건</u> 6. ~ 7. <u>신 설 (기존 6호는 8호로 이전)</u> 	<p>제 9 조(계약의 조건) (현행과 같음)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----- <u>유지하는</u> 조건. 3. <u>버스주행 외에</u>----- 4. 2시간 <u>연속운행 후 15분이상 휴식보장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3시간 운행한 경우 30분 이상 휴식보장 조건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여객의 질서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조건</u> 7. <u>숙박운행 및 파견근무 등 승무원의 당일 운행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운행시작시간까지 법정 휴게시간 및 숙식보장 조건</u> 8. 기타 안전운행과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조건

현행	개정안
<p>제 10 조(계약서의 기재사항)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. 운송구간 (승차 및 출발장소, 운행거리 및 경로, 운행종료장소 포함) 3. 사용시간 (출발시간 및 도착시간포함) 4. 운임총액, 계약금 잔액 5.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6. 여객의 준수사항 7.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 8.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	<p>제 10 조(계약서의 기재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약신청자의 <u>주소, 성명 및 연락처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사용일시 (-----) 4. ~ 8. (현행과 같음)
<p>제 11 조(운임의 지불) ①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(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)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써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신 설</u></p>	<p>제 11 조(운임의 지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운임은 승무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없다. 다만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별도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
<p>제 12 조(계약의 취소) 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<u>버스사용일시의 48시간 이전에</u>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,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<u>48시간 이내에</u>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,</p>	<p>제 12 조(계약의 취소) ① ----- ----- <u>버스사용일시 도래 72시간 이전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72시간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,</p>

현행	개정안
<p>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사용일시의 <u>24시간 전</u>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<u>100분의 10</u></p> <p>2. 사용일시의 <u>24시간 내</u>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<u>100분의 20</u></p> <p>3.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<u>100분의 30</u></p> <p>4. <u>신 설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u>48시간 전</u>에 -----</p> <p>----- <u>100분의 10</u></p> <p>2. ----- <u>48시간 내</u>에 -----</p> <p>----- <u>100분의 20</u>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00분의 30</u></p>
<p>제 13 조(운송의 취소)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, 파업,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, 운송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3 조(운송의 취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3 장 여객</p> <p>제 14 조(여객에 의한 계약변경) ①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.</p> <p>②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이 증감되는 등 사업자 및 여객에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 3 장 여객</p> <p>제 14 조(여객에 의한 계약변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15 조(여객의 금지행위) ①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기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 2.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. <u>금연표시가 있는 좌석에서</u> <u>깍연하는 행위</u> 4.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 5. <u>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</u> 차량의 기계장치,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6. 운행 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7.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, 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 8. <u>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</u> <u>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행위</u> <p>8. ~ 10. <u>신 설 (기존 8호는 11호로 이전)</u></p> <p>②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폭발성물질, 부식성물질,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. 동물(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) 3. 불결,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	<p>제 15 조(여객의 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----- 2. <u>음주</u>,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. <u>차내에서 흡연하는 행위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승무원의 승낙 없이</u> 차량의 기계장치, 비상구, <u>적재함</u> 등을 조작하는 행위 6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소화기, 안전망치 등 안전장비를</u> <u>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행위</u> 9. <u>노래방기기 설치 및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</u> 10. <u>대열운행을 요구하는 행위</u> 11. <u>기타 승무원의 여객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</u> <u>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</u> <p>②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4. 통로,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</p> <p>5.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,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</p> <p>5. <u>신 설 (기존 5호는 6호로 이전)</u></p>	<p>5. <u>취사도구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</u></p> <p>6.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,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</p>
<p>제 16 조(운송의 거절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</p> <p>1.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</p> <p>2. 여객이 버스 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 <p>3.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때</p> <p>4. <u>약관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</u></p>	<p>제 16 조(운송의 거절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<u>경우</u></p> <p>4. <u>약관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
<p>제 17 조(운송의 책임)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<u>시기와 종기는</u> 계약내용에 따라 <u>시발지</u>를 출발하여 <u>목적지</u>에 도착한 때까지로 한다.</p> <p>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,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</u>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운송 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⑦ <u>신 설</u></p>	<p>제 17 조(운송의 책임)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<u>시작과 종료는</u> 계약내용에 따라 <u>출발지</u>를 출발하여 <u>목적지</u>에 도착한 때까지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승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는</u>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차내 안전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내문을 게시한다.</u></p> <p>⑥ <u>차내 청결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한다.</u></p> <p>⑦ <u>승무원은 차량 출발 전 안전관련 안내 또는 시청각자료를 승객들에게 방송하도록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18 조(여객의 책임)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여객은 차내 <u>지입제한</u>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<u>대하여는</u> 휴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.</p> <p>③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신 설</u></p>	<p>제 18 조(여객의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여객은 차내 <u>반입제한</u>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<u>대해서는</u> 휴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9 조(면책사항)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천재지변,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,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, 분실 또는 훼손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<u>신 설</u> 	<p>제 19 조(면책사항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여객이 약관 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</u>
<p>제 4 장 수 화 물</p>	<p>제 4 장 수 화 물</p>
<p>제 20 조(수화물) 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.</p>	<p>제 20 조(수화물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21 조(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)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<u>미만으로</u> 하고, <u>부피는 장70cm, 폭 40cm, 높이 40cm</u>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	<p>제 21 조(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)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<u>이하로</u> 하고, <u>부피는 가로46cm, 세로 77cm, 폭 35cm</u>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22 조(보관책임 및 내용조사) ①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화물의 인수, 인도, 보관은 사절하며 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 할 수 있다.</p> <p>제 23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<u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</u>에 따라 시·도 지사에 신고,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부 칙 본 약관은 200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 22 조(보관책임 및 내용조사) ① ~ ②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 23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<u>여객자동차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</u>에 따라 <u>서울특별시</u>에 신고,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부 칙 본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